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제21조(담보증권의 제공) ① 차액결제참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결제이행을 위한 담보로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호부터 제12호의 증권으로서 자기가 발행한 증권은 차액결제이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</p> <p>1. ~ 10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 <p>11. (생략)</p> <p>12. (생략)</p> <p>②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, 제10호, 제11호의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1인 이상으로부터 AA-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획득한 증권(2인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획득한 신용등급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최저등급이 AA-등급 이상의 증권)으로 한정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한국은행은 차액결제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·제2호의 담보증권은 제1그룹으로, 제1항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담보증권은 제2그룹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 다만 제1항제3호부터 제12호까지의 담보증권 중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1그룹으로 관리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>⑥ (생략)</p>	<p>제21조(담보증권의 제공) ① 차액결제참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결제이행을 위한 담보로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호부터 제13호의 증권으로서 자기가 발행한 증권은 차액결제이행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</p> <p>1. ~ 10. (현행과 같음)</p> <p>11. 「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</p> <p>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, 제10호, 제11호, 제12호의 경우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평가회사 1인 이상으로부터 AA-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획득한 증권(2인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획득한 신용등급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최저등급이 AA-등급 이상의 증권)으로 한정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한국은행은 차액결제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·제2호의 담보증권은 제1그룹으로, 제1항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담보증권은 제2그룹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 다만 제1항제3호부터 제13호까지의 담보증권 중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은 제1그룹으로 관리한다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(현행과 같음)</p>	<p>- 담보대상증권 추가에 따른 수정</p> <p>-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담보대상증권에 추가</p> <p>- 호 번호 내림</p> <p>- 호 번호 내림</p> <p>-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신용등급 제한 추가 및 호 신설에 따른 변경</p> <p>- 추가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제2그룹으로 분류</p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 <2024. 6. ></p> <p>이 규정은 2024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.</p>	<p>- 부칙 신설</p> <p>- 시행일자 명시</p>